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197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9. 10. 16.
4. 회부일자 : 2019. 10. 22.

II. 개정이유

- 2020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유치원 17개원을 신설하고,
-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유치원 1개원을 폐지하며, 기 설치된 서울특별시립 학교 1개교의 교육지원청·자치구명을 정정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1. 초등학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1)

신설: 1개교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고현초등학교(강동구 상일로11길 110)

폐지: 1개교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염강초등학교(강서구 허준로 221-22)

2. 중학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2)

□ 신설: 2개교

- 남부교육지원청
 - 향동중학교(구로구 연동로 239-2)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마곡하늬중학교(강서구 마곡서1로 16)

□ 폐지: 1개교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공진중학교(강서구 양천로55길 56)

3. 방송통신고등학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4)

□ 정정: 1개교

- 수도여자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 교육지원청 정정: 중부 → 동작관악
 - 자치구명 정정: 용산구 → 동작구

4. 유치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7)

□ 신설: 17개원

- 서부교육지원청
 - 서울동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마포구 월드컵로25길 86)
 - 서울월드컵유치원(마포구 월드컵북로 233-1)
 - 서울북한산유치원(은평구 진관1로 77-15)
 - 서울산울림유치원(은평구 진관4로 93)
 - 서울역촌유치원(은평구 진흥로7길 25)
- 북부교육지원청
 - 서울수락산유치원(노원구 동일로245길 162)
 - 서울연지유치원(노원구 월계로55길 16)
 - 서울마들유치원(도봉구 마들로 567)
 - 서울방학유치원(도봉구 도당로6길 14-11)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강술유치원(강동구 고덕로97길 80)

- 서울고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동구 상일로11길 110)
- 서울솔가람유치원분원(송파구 위례순환로 477)
- 서울송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송파구 백제고분로 400)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서울어진유치원(서초구 태봉로2길 21)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서울남현유치원(관악구 남현4길 51)
 - 서울당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관악구 보라매로2길 23)
 - 서울청림유치원(관악구 청림5길 22)
- 폐지: 1개원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강술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동구 고덕로97길 80)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별첨 5])

가.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별첨 2])

3. 관련부서 협의 :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과 협의완료

4. 기 타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나. 입법예고(2019.10.1. ~ 10.11.) 결과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3]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확인서 [별첨4]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197호로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2개교, 유치원 17개원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유치원 1개원을 폐지하며, 방송통신고의 주소 정비에 따른 후속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학교 신설의 건

- 동 개정조례안에 제출된 학교신설은 고현초등학교와 향동중학교, 마곡하늬중학교 등 3개교와 남현유치원, 강솔유치원 등 단설유치원 2개원 및 고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동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송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 당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병설유치원 4개원, 유치원 분원형태로 설립될 서울솔가람유치원분원 1개원, 그리고 매입형유치원 10개원 등 총 20개교(원)가 내년 3월 1일에 개교될 예정에 있는바,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우선 고현초등학교와 고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향동중학교, 마곡하늬중학교, 남현유치원 등 4개교(원)는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2019년 10월 기준으로 모두 58%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내년 3월 1일 개교가 예정되는바, 4개교(원)의 신설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데 있어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강술유치원은 종전 강술초병설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하는 것이며, 고현초병설유치원은 고현초 신설과 같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교초병설유치원과 송파초병설유치원, 당곡초병설유치원은 기존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인바,

이들 유치원은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 확충이라는 필요성에 따라 학교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솔가람유치원분원의 건은 송파구 위례지구에 위치한 단설유치원인 솔가람유치원을 위례포레시안 아파트 단지내에 분원의 형태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의 분교와 달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1)) 유치원은 현재 분교에 대한 상위법령상 규정이 없고, 병설의 형태만 「유아교육법」 제9조2)에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 유치원의 분원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처럼 유치원의 분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분원 설립을 위한 설계 완료 및 업체 선정까지 진행하고 유아모집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 더욱이 입법예고안은 입법 과정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예상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바, 서울시교육청의 이러

1)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한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솔가람유치원 분원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토지매입비	건물취득비	건설비(리모델링)	합계
소요액	1,143,600	838,640	778,122	2,760,362

○ 한편 신설되는 학교의 교명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제4조3)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고현초, 향동중, 마곡하늬중, 남현유, 강솔유, 솔가람유치원분원 등 6개교(원)의 교명은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거친 후 서울시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것으로 교명과 관련하여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학교명 심의 결과

(기준 : 2019.10.)

학교명	가칭 학교명	관리계획안 승인일	공정율 (%)	교명제정자문위원회		교명제정심의위원회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재심의)	
				선정명칭	심의일	선정명칭	심의일	선정명칭	심의일
고현초	고이초	2018.4.13	60	고현초	2019.8.27.	고현초	2019.9.20.		
향동중	향동중	2017.12.15	65	향동중	2019.8.23	향동중	2019.9.20.		
마곡하늬중	마곡2중	2017.12.15.	58	하늘길중	2019.8.27.	하늘길중	2019.9.20.	마곡하늬중	2019.10.14.
남현유	사당유	2017.12.15.	58	남현유	2019.9.5	남현유	2019.9.20.		

- 3) 제4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하에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강술유	강술초 병설유	대상아님	완료	강술유	2019.8.27.	강술유	2019.9.20		
솔가람유 분원	솔가람유 분원	대상아님	설계중	솔가람유 해솔분원	2019.8.27	솔가람유 분원	2019.9.20		

○ 마지막으로 매입형유치원 10개원 중 역촌유치원, 연지유치원, 마들유치원, 방학유치원, 월드컵유치원 등 5개원은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관리계획의 승인 및 추경예산안에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었으며, 북한산유치원, 산울림유치원, 수락산유치원, 어진유치원, 청림유치원 등 5개원은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과 예산심의회가 동시에 추진된 것입니다.

- 다만 10개의 매입형유치원 중 청림유치원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시 각각 재산취득 목록의 삭제 및 관련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진 바, 동 조례안에서도 삭제하여야 하며,

월드컵유치원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매입비용이 54억 2천만원으로 승인되었으나, 실제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매입비용이 당초 매입비 대비 36.02%(19억 5천 3백만원)가 증가한 73억 7천 3백만원으로 산정되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동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

4)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료됩니다.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매입형유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 탁상감정을 통해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 감정평가에서 탁상감정가보다 높은 비용이 산정되고 있어 자체·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등 학교 설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3] 매입형 유치원 매입비용 비교

(단위 : 억원)

유치원명	관리계획상 설립비용 (탁상감정)	실제 설립비용 (감정평가)	차이	
			금액	비율(%)
좋은소리유	40.8	48.12	7.32	17.94
수명유	58.2	65.30	7.10	12.20
신정유	61.3	65.58	4.28	6.98
금남화유	51.4	48.99	△ 2.41	△ 4.69
월드컵유	54.2	73.73	19.53	36.02
방학유	24.2	25.46	1.26	5.21
창동유	38.2	42.51	4.31	11.28
연지유	44.5	54.97	10.47	23.53
역촌유	55.7	60.24	4.54	8.15
합계	428.5	484.9	56.4	13.16

- 한편 매입형유치원의 교명은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교명제정자문위원회 및 서울시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4] 매입형 유치원 교명 심의 결과

학교명	가칭 학교명	교명제정자문위원회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선정명칭	심의일	선정명칭	심의일

북한산유	은평유	북한산유	2019.9.10.	북한산유	2019.9.20.
산울림유	상림유	산울림유	2019.9.10.	산울림유	2019.9.20.
역촌유	역촌유	역촌유	2019.9.10.	역촌유	2019.9.20.
수락산	수락빛유	수락빛유	2019.9.10.	수락빛유	2019.9.20.
연지유	연지유	연지유	2019.9.10.	연지유	2019.9.20.
마들유	창동유	창사유	2019.9.10.	창사유	2019.9.20.
방학유	방학유	방학유	2019.9.10.	방학유	2019.9.20.
어진유	수정별유	어진유	2019.9.10.	어진유	2019.9.20.
청림유	청림유	청림유	2019.9.5.	청림유	2019.9.20.
월드컵유	월드컵유	월드컵유	2019.9.10.	월드컵유	2019.9.20.

나. 학교 폐지의 건

- 동 개정조례안에 제출된 폐지의 건은 염강초등학교, 공진중학교, 강술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3개교(원)입니다.
 - 이 중 염강초와 공진중학교는 마곡하늬중학교 신설에 따른 폐교이며, 강술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동 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사항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인바,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위치 이전 및 주소정비의 건

- 동 개정조례안에 제출된 수도여자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 정정의 건은 조례에 잘못 반영된 동 고등학교의 소속 교육지원청과 자치구명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수도여고부설방송통신고는 지난 2019년 5월에 잘못된 위치를 정정하였으나 소속 교육지원청과 자치구명을 일괄 정비하지 않았는바, 동 개정 조례안은 잘못 정비된 사항을 정정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

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1호, 2017.3.21., 일부개정]

-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시행 2018.1.1.] [법률 제11212호, 2012.1.26.,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